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
----------	----

발의연월일 발의자	2022년 11월 10일 정기혁 의원 외 6명
--------------	------------------------------

오중균, 김육영, 김경이, 이호건,
정윤주, 임현주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부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권한 사항 (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⑩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특별휴가) ⑩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특별휴가) ⑩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